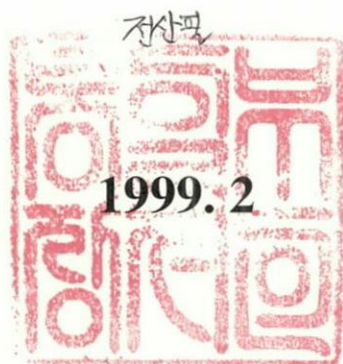


【 자 립 · 자 활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



통 일 부
(인도지원국)

안내순서

- 머 리 말 · 5
- 1. 주거지원 · 6
- 2. 직업훈련 · 10
- 3. 자격증 취득 및 취업 · 13
- 4. 교육지원 · 16
- 5. 생활보호 · 22
- 6. 의료보호 · 25
- 관련기관 · 단체 · 28
- 직업훈련 직종 · 30

머 리 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여러분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입국한 여러분의 조속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응교육과 가족구성원, 연령, 근로능력 등에 따라 정착금·주거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과 취업기회부여, 교육지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는 일정기간 생활보호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교육·훈련비용은 물론 훈련기간중 생활지원을 위해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 생계비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사회정착 초기단계에 소요되는 정착금 등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지급하고 있으며, '94-'98 입국자(일부제외)에 대해서는 생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이 장차 건전한 민주시민과 통일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사회정착, 경제적 자립·자활, 사회적 일체감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99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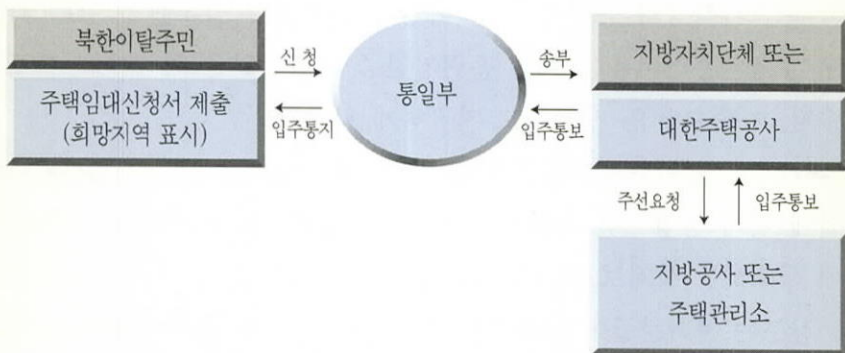
통일부 인도지원국

1. 주거지원

정부는 '97.7.14 북한이탈주민법 시행이후 국내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 · 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에 필요한 주거지원금(일부 무상지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게 될 주택은 정착하게 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입주를 주선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 · 시기 등은 당해 정착지역의 주택사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입주시기는 임대주택 공가(빈집)발생 형편에 따라 입주순번이 주어지게 되므로 때로는 일정기간 대기후에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문답식 해설

- (1) 직장·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특별공급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임대 또는 분양) 입주는 한 세대 당 한번만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세민, 중군위안부, 장애인, 철거민 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므로 모든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해 1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반납하더라도 차순의 당첨자에게 계속 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2조제1항)해야 하므로 재차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직장 등이 변경되어 살고 있는 임대주택과 활동지역이 달라진 경우 교환하려는 상대방이 있거나 교환지역에 공가(빈집)가 있을시는 상호교환이 가능합니다.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정착하게 될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정에 따라 입주대기기간이 달라집니다.

서울·경기지역 등 수도권은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수량에 비하여 입주희망자가 너무 많아 1년이상 입주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는 취업·취학 등 생활 여건이 좋으면서도 입주 대기기간이 3개월 내외입니다.

거주 희망지역을 결정할 때는 입주 대기기간 등 각 지역의 주택사정, 취학·취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지원금의 10%(약 95만원-12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 내지 15%(약 140만원-16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 이외의 전지역)의 가산금을 거주지 편입 6월이후 추가로 드립니다.

- (3) 1997.7 이전에 입국한 사람이 무주택자인 경우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우선받을 수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법의 주거지원은 동법 시행이전 입국한 후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 이전에 입국한 사람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등 기존 법률에 의해 이미 주거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북한이탈주민법의 주거지원은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것이므로, 동법 시행이전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이며 생활이 곤란한 사람의 경우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국내 영세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2. 직업훈련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훈련에는 전문영농 분야의 훈련도 포함됩니다.

〈직업훈련 신청절차〉



직업훈련은 신청자의 적성·취업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공공 또는 사설 직업훈련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업훈련은 교통편의를 고려, 가능한한 여러분들의 「거주지역」 인근의 직업훈련기관에서 받도록 하며, 직업훈련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그외에 가계보조수당·가족수당, 교통비·식비 등 최저생활비를 지급하여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여러분의 자립자활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고 장차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훈련수당 지급기준〉

| 훈련수당 | 지급대상 | 지급기준액(1인1월기준) |
|-----------|-----------------------------|---|
| 가계보조수당 | 세대주 훈련생 | ○ 주간 : 15만원 ○ 야간 : 7만원 |
| 가족수당 | 세대주 훈련생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4인까지 | ○ 주간 : 부양가족 1인당 4만원 ○ 야간 : 부양가족 1인당 3만원 |
| 교통비 | 모든 훈련생 | ○ 주·야간(월25일기준) : 공히 5만원 |
| 우선선정 직종수당 | 「우선선정 직종」(별첨)을 훈련받는 훈련생 | ○ 주·야간 : 공히 5만원 |
| 식비 | 모든 훈련생 | ○ 주간(2식, 월25일 기준) : 10만원 ○ 야간(1식, 월25일 기준) : 5만원 |

※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특별생계보조금 수혜자에 대해서는 가계보조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가족수당 등 제경비는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훈련중 무단결석 일수가 5일이 넘는 경우는 월지급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훈련중 무단결석 일수와 허락결석 일수 합계가 총 10일이 넘는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출석한 날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문답식 해설

(1)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업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일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훈련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훈련계획을 세워서 통일부에 요구하면 훈련상담을 통하여 확정합니다.

직업교육훈련의 직종(별첨) · 훈련기간(3월-12월) · 훈련기관 등은 통일부와 상담하여 본인이 선택합니다.

정부에서는 1회에 한해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훈련중단 또는 직종 변경시에는 훈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질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업훈련은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직업훈련은 전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직업훈련기관 중에서 교통편의, 훈련직종, 훈련시간(주간·야간)등을 잘 알아보고 본인의 형편에 맞는 훈련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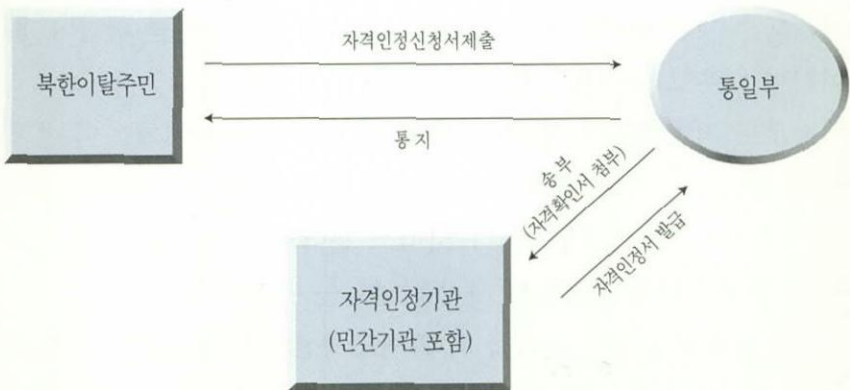
훈련기관은 본인이 직접 또는 주변의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 볼 수도 있고, 훈련상담시에 통일부 관계관과 상담을 하면 됩니다.

3.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직업훈련을 권장하는 것은 훈련이수중 또는 이수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만 모든 분야의 기술과 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당해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격인정 신청절차〉



❀ 문답식 해설

- (1) 직업훈련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또한 취업도 보장됩니까?

직업훈련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용이하며, 자격증이 있는 경우 취업가능성은 한결 높아집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도중 또는 훈련 이수후 훈련받은 분야의 기능·기술사자격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정시험에 대해서는 각 훈련기관이 안내를 해 줄 뿐만 아니라 시험대비를 위한 학습지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그만큼 취업이 용이하며 대우도 좋아 집니다.

정부도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취업을 주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능력과 적성은 고려하지 않고 사무직이나 서비스 분야의 직업만을 원하는 경우는 취업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해 제도개선에 힘쓰고, 여러분들은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에 노력한다면 어려운 취업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격취득에 관한 관계법령에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일부 면제,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의 일부(장내기능시험)를 면제하여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의 경우에는 의과·치과·한의학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 받은후 해당한 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교육지원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국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7.7.14이후 보호결정된 사람은 ①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편입학한 경우 만25세 미만인 자, ②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편입학한 경우는 만35세 미만인 자(지원기간은 편입학후 4년, 단 의학, 치의학, 한의학 계통은 6년)에 한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북한이탈주민 본인>

- 97.7.13이전 국내입국하여 등록된 사람
- 97.7.14이후 등록되고 연령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자녀>

- 93.12.10 이전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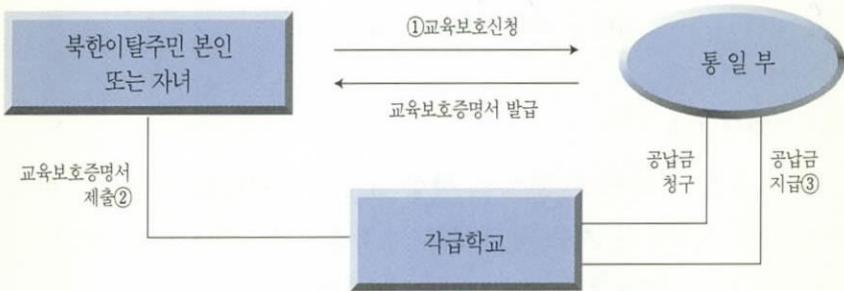
교육지원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력확인(인정)



- 학력 확인 : 통일부장관이 재북학력을 확인하여 학력확인서 발급
 - 학력 인정 : 교육부장관이 재북 수학기간 및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학력 인정
- ※ 고등학교 이하는 수학기간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은 수학기간과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3) 학교의 편·입학

- 교육청 및 대학당국의 편·입학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학력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 공납금 지원

- 교육보호대상자의 편·입학이 결정되면 해당학교가 면제시키

거나 본인의 신청을 받아 통일부에 공납금 지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 국·공립학교 : 해당 학교가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 전액 면제

- 사립학교 : 해당학교가 통일부에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의 50%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며, 나머지 50%는 학교에서 지원

* 신청서류 : 국고보조금신청서, 성적증명서(93.12.11 이전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평균학업성적이 만점의 70% 미만일 때는 공납금 지원 제한)

(5) 학자금 지원

○ 93.12.11 이전에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통일부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시행령이 정하는 소정금액을 2회(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본인계좌에 입금됩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중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 | 특수학교 | |
|---------|------------------------|----------------------|-----|------------------|--------------|
| | | 인문 | 실업 |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 | 중·고등학교 과정 |
| 1인당 지급액 | .77 | 90 | 117 | 434 | 579 |

*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액

♣ 문답식 해설

- (1) 교육보호를 받아 대학에 다니는 경우 총 수학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공납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년 동안만 공납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년(8학기)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단 의학 계통은 6년 12학기)

- (2)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으로 휴학할 경우 복학한 후에 다시 공납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으로서 휴학하여 복학한 경우에도 재학 4년(8학기, 의대 등은 12학기) 한도내에서 계속 공납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교육보호를 받아 전문대를 졸업한 후에 다시 일반대학에진학할 경우 공납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대를 졸업한후 일반대학에 편입학할 경우 나머지 2년(의대등은 4년) 간만 공납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교육지원 혜택을 받고 있던 '93.12이전 보호대상자 자녀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교육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 남북한 학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전문대학 이상은 수학기간과 수학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학력을 인정하나, 고등학교이하는 수학기간에 따라 인정되기 때문에 예컨대,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5년과정을 수료한 경우 남한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단,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대학입학 허가여부는 대학당국에서 판단하여 결정)

〈학제비교〉

〈북 한〉

| | |
|---------------|-----|
| 대학교 (전문대학) | 4학년 |
| | 3학년 |
| | 2학년 |
| | 1학년 |

| | |
|------------|-----|
| 고 등 중학교 | 6학년 |
| | 5학년 |
| | 4학년 |
| | 3학년 |
| | 2학년 |
| | 1학년 |
| 인민학교 | 4학년 |
| | 3학년 |
| | 2학년 |
| | 1학년 |
| (유치원 높은반) | 1년 |

〈남 한〉

| | |
|---------------|-----|
| 대학교 (전문대학) | 4학년 |
| | 3학년 |
| | 2학년 |
| | 1학년 |
| 고등학교 | 3학년 |
| | 2학년 |
| | 1학년 |
| 중학교 | 3학년 |
| | 2학년 |
| | 1학년 |
| 초등학교 | 6학년 |
| | 5학년 |
| | 4학년 |
| | 3학년 |
| | 2학년 |
| 1학년 |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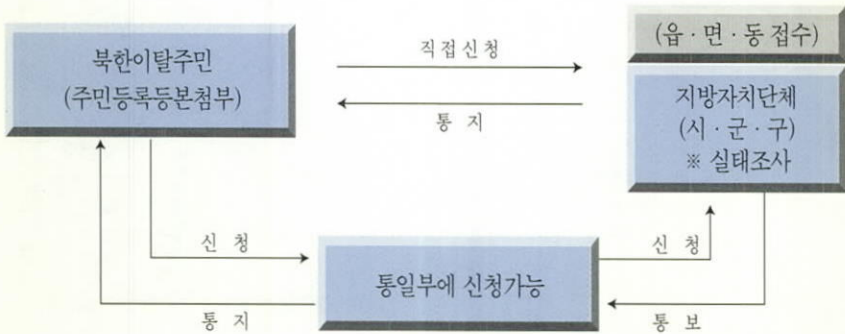
5. 생활보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생활보호법에 정해진 보호대상 요건과 기준에 따라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제3조)에 따른 생활보호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쇠자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 위에 해당하는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생활보호 신청절차 〉



위 대상자중 1인 월소득 23만원이하, 총재산액 2,900만원 이하인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면 가족수, 등급에 따라 일정한 생계비(1인 7만9천원-4인가족 40여만원)를 지원받게 됩니다.

통일부장관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한규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례적으로 생활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문답식 해설

(1) 생활보호 신청은 통일부에 합니까?

생활보호 신청은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도 여타 영세민과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신청자들과 같이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생활보호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생계곤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생활보호가 필요하나 생활보호법에 의해서는 생활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는 통일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생활보호혜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여건이 향상되어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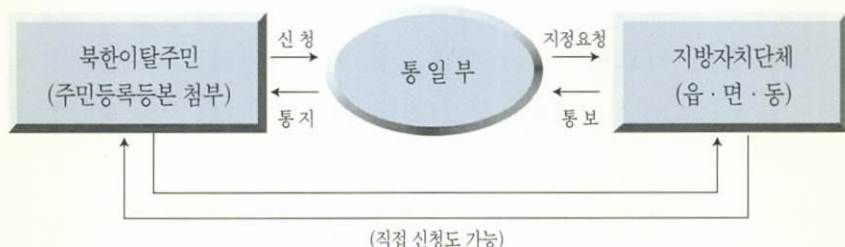
우리사회 초기 정착단계에서 장기간 미취업, 실업 등으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완전정착하고 자립, 자활의 토대가 마련되어 생활여건이 향상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6. 의료보호

국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가족 포함)은 입국시기와 무관하게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진료기관에서 진찰, 치료(특수진료제외)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보호 신청절차 〉



의료보호기간이 연간 3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호기관(읍·면·동)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계속 진료가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사람은 의료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직장 또는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의료보험과 의료보호의 동시가입 금지)
- 공무원·사립학교교원·영관급이상의 장교로 임용된 자나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 받은 자

♣ 문답식 해설

(1) 의료보호증은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1~12.31까지이므로 매년초 거주지 읍·면·동에서 재사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 중인 의료보호증은 매년 1월 거주지역의 기초단체(읍·면·동사무소)에서 재사용 확인(변경사실 포함)을 받음으로써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 미통보로 매년초 재지정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라도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추가지정될 수 있으나, 의료보호혜택은 지정일시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사실이 있는 경우 통일부에 즉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2)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 등으로 직장의료보험에서 탈퇴하게 되면 다시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직장·지역의료보험 탈퇴 증명서를 통일부에 제출하면 의료보호대상자로 다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3)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경우 보호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보호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까?

보호대상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가족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의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의료보호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가능한가?

보호대상자는 시·도지사 등이 직권으로 지정(약 90%)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에서만 해당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99% 지정)

◆ 관련기관 · 단체

통일부(인도지원국)

- 지원1과 720-2422, 725-0765(주택, 의료, 교육, 자격인정)
- 지원2과 738-7522, 725-3945(직업훈련, 취업)

노동부

- 훈련정책과 503-9754~5(취업전반)
- 능력개발과 503-9759, 1765(직업훈련)
- 자격진흥과 503-9758(자격)

서울시 교육청 399 -9291

북한이탈주민후원회 395-8454-7

민간기구

- 이북도민회 395-3201
- 대한적십자사 755-9301
- 승의동지회 706-3838
- 무료법률상담 731-6158(서울시)
3476-0986(대한변호사협회)
3461-0299(법률구조공단)

인력은행(구직 · 구인 정보)

- 서울인력은행 02)876-1919
- 경기인력은행 0331) 221-8415-8
- 인천인력은행 032) 428-0860-2
- 부산인력은행 051) 808-2370-2
- 대전인력은행 042) 487-1919
- 광주인력은행 062) 514-4230-7
- 대구인력은행 053) 257-6491-4
- 울산인력은행 052) 273-1919
- 경남인력은행 0551) 99-9636
- 부천인력은행 032) 326-0521-5
- 원주인력은행 0371) 764-8219
- 천안인력은행 0417) 554-4800
- 안산인력은행 0345) 87-9110-2
- 포항인력은행 0562) 84-1350-6
- 전주인력은행 0652) 244-1919

◆ **직업교육훈련 직종(447종)**

밑줄(-)친 분야는 우선선정 직종

| 분 야 | 직 종 |
|----------------|---|
| 기계분야 (79) | 기계, 건설기계, 계량기계, 계량물리, 계량전기, 공정설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사출금형설계, 용접기사, 유회관리, 일반기계,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전산응용설계, 전산응용가공, 정밀측정, 중기정비, 철도차량, 치공구설계, 프레스금형설계, 객화차정비, 건설중기운전, 계량기계, 계량물리, 계량전기, 공조냉동기계, 금형제작, 기계가공, 기계정비, 기계제도, <u>기계조립</u> ,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다듬질, 도로포장중기운전, <u>배관</u> , 보일러, 시계수리, 양화장치운전, 열차조작, 영상, <u>용접기능사</u> , 운반기중장비운전,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 전산응용기계제도, <u>전산응용가공</u> , 정밀측정, 제관, 준설장비운전, 건설기계정비, 천정기중기운전, 철골구조물, 철도동력차, 판금제관, 공유압, 기계전자, 수치제어, 시스템제어, <u>금형다기능</u> , 기계설계다기능, 기계정비다기능, 메카트로닉스다기능, 산업설비다기능, 생산기계다기능, 생산자동화다기능, 자동차다기능, 정밀계측다기능, 용접검사원, <u>판금</u> , <u>공작기계</u> , <u>선반</u> , 밀링, 정밀기계, <u>생산가공</u> , <u>방전기공</u> , 머시닝센터 |
| 금속분야 (20) | 금속기술사, 금속기사, 비파괴검사기사, 금속재료, 단조, 도금, 비파괴검사기능사, 압연, 열처리, 원형, 인발, 제강, 제선, <u>주조</u> , 축로, 금속다기능, 정밀주조, 목형, 일반조형, 특수도금 |
| 화공, 요업 (17) | 화공기술사, 요업기술사, 공업화학기사, 요업기사, 화공기사, 화약류제조, 가죽처리, 고무제품제조, 내화물제조, 세라믹, 시멘트제조, 위험물취급, 유리제조, 제지, 플라스틱제품,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조 |

| 분 야 | 직 종 |
|--------------|--|
| 전기분야 (9) | 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철도신호기사, 승강기보수,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기, 철도신호기능사, 전기다기능 |
| 전자분야 (9) | 전자기술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 공업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다기능 |
| 통신분야 (19) | 통신, 무선설비기사, 유선설비, 전파전자, 전파통신, 정보통신설비, 사무정보기기응용, 무선설비기능사, 선로설비, 유선방송설비, 전파통신기능사, 전화교환, 정보기계설비, 정보기기응용, 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다기능, 아마추어무선, 특수급무선통신사, 특수무선 |
| 조선분야 (6) | 조선기술사, 선박기계, 조선기사, <u>선박기관정비</u> , <u>선체조립·가공</u> , 조선제도 |
| 항공분야 (10) | 항공기술사, 항공기사, 항공정비기능사, 운항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항공공작장비사, 항공정비사 |
| 토목분야 (11) | 토목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건설재료, 보선기, 석공, 측량, 콘크리트, 토목제도, 포장 |
| 건축분야 (24) | 건축기술사, 건축기사, 건축설비, 의장,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u>금속재창호</u> , 도배, 건축목공, 목재창호, <u>미장</u> , 방수, 비계, <u>온돌</u> , 유리시공, <u>조적</u> , <u>철근</u> , <u>타일</u> , 건축사, 주택관리사, <u>거푸집</u> , <u>온수온돌</u> , <u>철근콘크리트</u> |
| 섬유분야 (20) | 섬유, 방사, 방직, 생사기사, 염색가공, 의류, 방직기능사, 양복, 양장, 염색기능사, 제직, 직기조정, 직물가공, 편물, 한복, 호부기조정, 섬유기계, 섬유제도디자인, 봉제, 캐주얼웨어 |
| 광업자원 (11) | 광업자원, 광산, 광산보안기사, 석재, 시추기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기능사, 시추기능사, 굴착, 화약취급, 지하수 |

| 분 야 | 직 종 |
|--------------|---|
| 정보처리 (6) | 정보처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술다기능, 정보검색 |
| 국토개발 (11) |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기사, 지적기사, 측지, 도화, 조경기사, 지도제작, 지적기능사, 항공사진, 환지사 |
| 농림분야 (25) | <u>농림, 농화학, 식물보호, 식품제조, 영림기사, 원예종묘기사, 임산가공기사, 임업종묘기사, 축산기사, 과수재배, 버섯종묘, 식물보호, 식품가공, 영림기능사, 원예종묘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채소재배, 축산기능사, 화훼재배, 합판제조, 목재방부, 식육처리, 펄프제지, 인공수정</u> |
| 해양분야 (21) | 해양, 수산양식, 수산제조, 어로기사, 어병방역, 해양공학, 해양자원,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기능사, 잠수, 감정원, 검량원, 검수원, 기관사, 도선사, 소형선박조종사, 운항사, 통신사, 항해사, 해무사 |
| 산업디자인 (5) |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기사, 산업디자인다기능, 시각디자인다기능, 패션디자인다기능 |
| 에너지분야 (7) | 에너지, 열관리, 원자력,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 원자로조종면허, 핵연료물질취급 |
| 안전관리 (11) | 안전관리,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고압가스, 방화관리,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 소방시설, 위험물안전관리 |
| 환경분야 (7) | 환경기술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독물취급, 환경기능사 |
| 공예분야 (20) | <u>가구도장, 가구제작, 광고도장, 귀금속가공, 금속공예, 금속도장, 도자기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석공예, 인장공예, 자수,</u> |

| 분 야 | 직 종 |
|----------------|--|
| 공예분야 (20) | 조화공예, 칠기, 패세공, 표구, 보석감정, 귀금속공예다기능, 문화재수리, 목조 |
| 산업응용 (18) | 산업응용, 공정관리, 광학, 기상, 응용지질, 인쇄, 포장, 품질관리, 사진, 사진제판, 스크린인쇄, 신발류제조, 축소사진, 평판인쇄, 평판제판기능, 피아노조율, 그라비아인쇄, 인쇄기술다기능 |
| 교통분야 (7) | 교통기술사, 교통기사, 교통안전, 자동차운전, 택시운전, 기능검정원, <u>중장비운전</u> |
| 서비스분야 (9) | 미용, 세탁, 이용, 제과·제빵, 조리, 조주, 관광안내, 관광숙박업, 호텔지배인 |
| 사무분야 (8) | 부기, 비서, 속기, 워드프로세서, 주산, 무역영어, 세무회계, 컴퓨터속기 |
| 전문사무 (23) | 감정평가, 경매, 경영지도, 공인노무사, 공인중계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기술지도, 법무, 변리, 변호, 보험계리, 사서, 세무, 손해사정인, 주조사, 투자상담, 판매, 행정, 물류관리, 보험중개, 선물중개, 증권분석 |
| 교육, 사회 (14) | 경기지도자, 보육사, 사회교육, 사회복지사, 생활체육지도, 실기교사, 아동복지, 유치원교사, 중등교사, 직업훈련교사, 초등교사, 특수학교교사, 청소년지도자, 경비지도사 |
| 의료, 보건 (22) | 간호사, 간호조무, 물리치료, 방사선, 수의, 안경, 안마, 약사, 영양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의무기록사, 의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 조산, 치과기공, 치과위생, 치과의사, 한의사, 응급구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